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연구과정 운영 지침

2008.06.10.제정
2008.11.14.개정
2011.01.27.개정
2012.02.09.개정
2017.11.01.개정
2019.10.25.개정
2021.08.18. 개정
2024.02.08. 개정

제1조(목적) 한의학전문대학원(이하 “한의전”이라 한다) 학생들의 한의무석사 학위에 부응하는 연구역량의 개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과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한의전에 입학한 학생은 개인의 학위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운영 지침에 따른 연구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위원회) ① 삭제

② 삭제

③ 원활한 한의학연구과정 수행을 위해 한의학교육실운영위원회에서 제반사항을 논의한다

④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한의학연구과정의 평가
2. 지도교수 선임 및 변경
3. 연구주제 승인 및 변경
4. 연구실의 순환
5. 제출 논문의 승인
6. 한의학연구과정의 제반 활동

제4조(지도교수) ①학생은 제1학년 제2학기 말까지 지도교수를 정하여야 하며 지도교수의 허락을 득하여 1회에 한하여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②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 대학 및 연구소 소속의 전임교원을 한의전 전임교원과 함께 공동 지도교수로 선임할 수 있다.

③당해 (3월 1일 또는 9월 1일) 기준 재직잔여 기간이 3년 이하인 전임교원에게는 학생을 배정하지 아니한다.

④지도교수가 장기파견, 연구년, 휴직 등 신청 시 학생지도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연구논문제안서) ①한의전 전임교원은 1학년 2학기까지 도움 가능한 연구 주제를 학생에게 공지한다.

②제시된 연구주제에 따른 연구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지도교수의 허락을 득하여 연구 주제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연구과정 지원) 학생은 한의학연구과정 수행에 필요한 공간, 기기 및 기술적 학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연구논문 제출) ① 수료 당해 학년도 12월까지 논문 형태의 연구 보고서, 한국연구재단 미등재지, 해외 SCI(E) 미등재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또는 SCI(E)급 이상에 발표된 논문의 별쇄본 또는 논문게재 확인서(예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논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출된 논문의 제1저자가 한의학과 학생이어야 한다. 제1저자가 한의학과 학생인 논문에 한해 제2저자와 제3저자도 연구논문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 연구논문의 교신저자는 한의학연구과정 지도교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연구논문의 교신저자가 해당 지도교수가 아닌 경우에는 한의학교육실운영위원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한의학교육실운영위원장은 본건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④ 4학년 2학기 한의학연구 학점이 A+인 학생에게 위원회 심의에 따라 우수연구자상을 시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규정)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2.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1.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보고서 제출 경과조치) 제7조 6항 연구보고서 제출 사항은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 08.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02. 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보고서 제출 경과조치) 제7조 1항 “논문 형태의 연구 보고서” 제출은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